

의안 번호	2466	【다운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	-------------	--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 8. 22.(금)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25. 8. 22.(금)
- 다. 위원회 심사일자 : 2025. 9. 8.(월)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2025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신청을 위한 다운동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 같은 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업명 : 태화강 국가정원과 함께하는 정다운 정원마을
- 위치/면적 : 태화강국가정원길 121 일원 / A=147,787㎡
- 기간 : 2026년 ~ 2029년
- 사업비 : 30,000백만원(국비 15,000, 지방비 15,000)
- 주요내용 : 태화강국가정원 연계 체류형 관광 도시브랜드화
 - 흥(興)이 넘치는 정캉스
 - 정원스тей호텔 조성
 - 정원플레이호텔 조성
 - 마음테라피센터 조성

- 향(香)이 가득한 정(庭)캉스
 - 빛과 음악의 정원
 - 꽃과 이웃의 정원
- 정(庭)이 넘치는 정(情)다운 마을
 - 정원마을 놀이터 조성
 - 정다운 정원마을 이음사업

다. 근거법규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순정)

-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구청장이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광역시장의 승인 신청 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 제반 규정을 검토한바, 법령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심사결과 : 청취완료

근거법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20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등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제1항의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전에, 제2항의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신청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고,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경과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경우 제1항에 따른 확정 또는 제2항에 따른 승인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지원 사항에 대하여 결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장과의 협의, 지방위원회 심의, 공청회,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 및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결정을 할 때에는 국가가 지원할 대상 사업 및 재원의 규모와 지원방식 등의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⑦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된 국가지원사업을 소관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의 재정상황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항에 따른 결정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 ⑧ 제4항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국가지원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